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08
----------	------

2014년 3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6월 14일, 김기만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6월 18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201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기만 의원)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의되었음.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첫째,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안 제4조)
- 둘째,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활성화기본계획 및 연도별 신체활동 증진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5조, 안 제6조)
- 셋째, 신체활동증진협의체의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7조, 안 제8조)
- 넷째, 신체활동증진지원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9조)
- 다섯째, 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안 제11조)
- 여섯째, 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육성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안 제12조, 안 제13조)
- 마지막으로, 우수사례 시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음(안 제14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재대)

#### (1) 제안 배경 및 개요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sup>1)</sup>에 근거하여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이나,
  -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음

#### (2) 세부사항별 검토결과

##### 가. 본 조례안의 주요 특징

첫째,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둘째,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활성화기본계획 및 연도별 신체활동증진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1) 국민건강증진법(1995.1.5일 제정) 제정 이유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변화·운동부족·흡연·음주등으로 인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치료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영양개선·건강생활실천등 사전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셋째, 종합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증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음

넷째, 협의체의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사전검토와 업무효율화를 위해 신체활동증진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함

다섯째,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업무등에 반영토록 하였음

여섯째, 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육성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일곱째, 신체활동 증진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2)에 근거하여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 취지이나,
- 다만, 목적 부분에서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 함양”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정의 부분에서 “신체활동 증진사업”의 정의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등의 책무 부분에서 시책 추진 사항을 구체화 및 명확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제5조 제명을 명확히 하며, 제3장 신체활동증진협의회의 경우는 신체활동증진위원회로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9조 신체활동증진지원단의 업무와 수당부분과 제11조의 신체활동증진

---

2) 국민건강증진법(1995.1.5일 제정) 제정 이유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급성전염병의 발생은 줄어들고 있으나 식생활변화·운동부족·흡연·음주등으로 인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정책의 방향을 종래의 치료중심의 소극적 방법에서 보건교육·영양개선·건강생활실천등 사전예방적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업의 위탁부분도 일부 수정 또는 보완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 이유

-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수정 주요 내용

- 목적 부분에서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추가시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시장 등의 책무 부분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 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안 제7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08
----------	------------

제안년월일 : 2014년 3월 4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부분에서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추가시켜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 나. 시장 등의 책무 부분에서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 다. 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안 제7조)

## 3. 참고사항 : 없음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를 삭제한다.

안 “제1장 총 칙”, “제2장 계획의 수립”, “제3장 신체활동증진협의체”, “제4장 보칙”을 각각 삭제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의미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을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 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그 밖의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사업을 포함한다.



안 제3조 중 “서울시가 신체활동증진사업”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으로 한다.

안 제4조제2항 중 “시장이 요청하면 자치구청장, 관계기관과 단체는”을 “자치구청장 및 건강관련 유관단체는”으로 하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2.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지원(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안 제5조 중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인력 관리 및 소요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안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신체 활동활성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
  3. 신체활동활성화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연구
  5.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 조성
  6.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8. 전년도 실행계획의 점검·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9.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신체활동증진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실행계획의 평가와 반영
  3.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

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안 제8조 내지 10조는 삭제하고, 제11조는 10조로 하며,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제8조 내지 제9조와 제11조 내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검토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삭제>
제1장 총 칙	<삭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2. '건강증진'이란 신체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증진'이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증진사업'이란 신체활동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그 밖의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사업을 포함한다. <span style="float: right;">&lt;신설&gt;</span>	제2조 (정의) (원안과 같음) 1. ----- ----- ----- 말한다. 2. -----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 <삭제>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서울시가 신체활동증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원 안	수 정 안
<p><u>한 신체활동 활성화</u>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u>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u></p> <p>1. <u>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계획 수립</u></p> <p>2. <u>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추진</u></p> <p>3. <u>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 보급 및 지원</u></p> <p>4. <u>신체활동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지원</u></p> <p>5. <u>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비만 예방 사업 추진</u></p> <p>6. <u>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의 신체활동 활성화 지원</u></p> <p>7. <u>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u></p> <p>8. <u>지역사회 신체활동 사업 담당자의 연수 및 자질 향상</u></p> <p>② <u>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요청하면 자치구청장,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u></p>	<p>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p>1. <u>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u></p> <p>2. <u>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u></p> <p>3. <u>신체활동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지원(유아,여성,장애인,노인 등)</u></p> <p>② -----  <u>자치구청장 및 건강관련 유관단체는-----</u>  -----  -----.</p>
<p><u>제2장 계획의 수립</u></p>	<p>&lt;삭제&gt;</p>
<p>제5조(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활성화기본계획 수립 등) ① <u>시장은 서울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u>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u></p> <p>1. <u>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전략 및 목표 수립</u></p> <p>2. <u>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u></p> <p>3. <u>신체활동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인력 관리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u></p>	<p>제5조(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p> <p>① <u>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원안과 같음)</p> <p>1. <u>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u></p> <p>2. (원안과 같음)</p> <p>3. <u>신체활동 활성화 사업-----</u>  -----.</p>

원 안	수 정 안
<p>4. 그 밖에 <u>신체활동증진에</u> 필요한 사항</p> <p>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서울시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p>	<p>4. ----- <u>신체활동 활성화</u>-----</p> <p>③ (원안과 같음)</p>
<p>제6조(연도별 <u>신체활동증진실행계획 수립</u>)</p> <p>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u>신체활동증진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u>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u></p> <p>2. <u>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u></p> <p>3. <u>신체활동증진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u></p> <p>4. <u>신체활동증진 관련 조사·연구</u></p> <p>5. <u>신체활동증진을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u></p> <p>6. <u>신체활동증진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u></p> <p>7. <u>신체활동증진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u></p> <p>8. <u>전년도 실행계획의 점검·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u></p> <p>9. 그 밖에 <u>신체활동증진에</u> 필요한 사항</p>	<p>제6조(연도별 <u>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 수립</u>)</p> <p>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u>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u>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p>1. <u>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u></p> <p>2. <u>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u></p> <p>3. <u>신체활동활성화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u></p> <p>4. <u>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연구</u></p> <p>5. <u>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u></p> <p>6. <u>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u></p> <p>7. <u>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u></p> <p>8. <u>전년도 실행계획의 점검·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u></p> <p>9. 그 밖에 <u>신체활동 활성화에</u> 필요한 사항</p>
<p>제3장 <u>신체활동증진협의체</u></p>	<p>&lt;삭제&gt;</p>
<p>제7조(신체활동증진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p> <p>1. <u>종합계획</u></p> <p>2. <u>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u></p> <p>3. <u>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평가와 반영</u></p> <p>4. <u>신체활동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u></p> <p>5. 그 밖에 <u>신체활동증진에</u> 필요한 사항</p>	<p>제7조(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등)</p> <p>① 시장은 시민의 <u>신체활동증진을</u> 위하여 <u>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p> <p>1. <u>신체활동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u></p> <p>2. <u>연도별 실행계획의 평가와 반영</u></p> <p>3. <u>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u></p>

원 안	수 정 안
	<p>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p> <p>③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한다.</p>
<p>제8조(신체활동증진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에는 행정1부시장 및 공무원이 아닌 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선출한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건정책관</li> <li>2. 체육진흥과장</li> <li>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거나,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li> <li>4. 보건·체육·신체활동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3년 이상 보건·체육·신체활동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위촉 또는 지명한다</li> <li>5. 그 밖에 시장이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협의체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li> </ol> <p>④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lt;삭제&gt;</p>
<p>제9조(신체활동증진지원단) ① 협의체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사전검토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증진지원단을 둘 수</p>	<p>제8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검토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p>

원 안	수 정 안
<p>있다.</p> <p>② 신체활동증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활성화 사업 지원단을 둘 수 있다.</p> <p>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수당 등) 협의체 및 신체활동증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9조(수당 등)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4장 보 칙</p>	<p>&lt;삭제&gt;</p>
<p>제11조(계획의 평가)(생략)</p>	<p>제10조(계획의 평가)(원안과 같음)</p>
<p>제12조(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육성) 시장은 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1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3조(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신체활동증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p> <p>②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제12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p> <p>②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제14조(우수사례 시상 등)(생략)</p>	<p>제13조(우수사례 시상 등)(원안과 같음)</p>



#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체육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생활 실천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 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그 밖의 신체활동 및 건강증진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사업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2.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지원(유아,여성,장애인,노인 등)
-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자치구청장 및 건강관련 유관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인력관리 및 소요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서울시 예산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신체활동활성화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
2.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
3. 신체활동활성화사업의 연간운영계획, 기관의 임무,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관련 조사·연구
5.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교육, 홍보 등 환경조성

6.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7.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및 운영
8. 전년도 실행계획의 점검·분석·평가 및 그 결과의 반영
9.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체활동증진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실행계획의 평가와 반영
3.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의 자문 또는 심의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① 시장은 위원회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사전검토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계획의 평가)**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기관의 업무, 목표 및 성과지표를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의 대상업무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으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가 행하는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

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평가의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1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거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관계기관과 단체, 개인 등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우수사례 시상 등)**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